

해외취업지원센터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해외취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무) 센터는 학생의 해외취업, 글로벌 현장실습 및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 (세부사업) 센터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해외취업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
2. 해외 산업체 발굴 및 취업 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
3. 해외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
4. 해외취업 사후관리 및 경력개발에 관한 업무
5.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에 관한 업무
6. 해외 현장실습에 관한 업무
7. 기타 해외취업 및 해외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관리

제4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취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.
- 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
해외취업지원센터 규정(3-21-1)
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 (재정과 회계) ① 센터의 재원은 교비예산, 국고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협약에 의한 자금집행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제7조 (세칙) 본 규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및 업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